



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-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

단체 협약서

2018. 2. 22.

광주광역시교육청 /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

【 차 례 】

전 문	1
제1장 총칙	1
제2장 조합활동	2
제3장 단체교섭	5
제4장 노동쟁의	5
제5장 교육청의 사회적 책무	6
제6장 인사	6
제7장 고용보장	9
제8장 임금	9
제9장 근로시간 · 휴일 · 휴가	10
제10장 조합원의 인권 ·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	13
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	14
제12장 산업안전보건	16
제13장 복리후생	17
제14장 노사협의회	18
부 칙	18
직종별 협약	19

【전 문】

광주광역시교육청(이하 ‘교육청’이라 한다)과 광주지역교육공무직공동교섭단(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, 전국여성노동조합,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)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·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·문화·정치·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,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, 교육복지,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,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·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 【노동관계법 기본원칙 준수】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조례」에 의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약의 적용】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」 및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.

② 교육청은 본 협약에 준하는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3조 【적용범위】 본 협약은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 【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】 교육청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.

제5조 【차별대우의 금지 등】 ① 교육청은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한다.